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84
------------	-------

발의연월일 : 2023. 6. 15.

발의자 : 최영희 · 박대수 · 이현승
구자근 · 허은아 · 김학용
김미애 · 김성원 · 권명호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을 “무연고 시신”으로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u>①</u> · <u>②</u> (생 략) <u><신 설></u>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u>①</u> · <u>②</u> (현행과 같음) <u>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尸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③</u>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尸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u>④</u> ----- 무연고 시신----- ----- ----- ----- ----- -----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u>④</u> ~ <u>⑥</u>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의 처리)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 여는 <u>제12조제4항</u> 을 준용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 ---- <u>제12조제5항</u> -----.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 여는 <u>제12조제4항</u> 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12조제5항</u> -----.